

1987.4.11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영도구청
 편집인 : 김경민
 전화 : 731-8111-3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도구간길
 전 화 : 738-3337

12	19	20	21	22
----	----	----	----	----

보시

차 례

- **공정시험**
 ○ **물품관리전환소요조치** 3
 ○ **50 T/M이동식식물사기예방전환소요조치** 4
- **조**
 제 2152 호 : 서울특별시산업교육진흥작용실무능력검정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
 칙 5
- **규**
 제 2165 호 : 서울특별시자동화운전면허사무체외규칙중개정규칙 5

〈이면계속〉

[illegible]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도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2166 호 : 서울특별시 자문자문전문학원운영규칙상세정규칙	8
제 2167 호 : 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접수대행업자분규칙상세정규칙	19

◎ 시·교위규칙

제 312 호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25
------------------------------------	----

◎ 고 시

제 248 호 : 쇠고기및돼지고기연동가격	25
------------------------	----

◎ 공 고

제 239 호 : 도사개척안공탁	26
제 242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	27

◎ 사 령

공 문 시 행

성 동 구

건관 30241-9284

(447-5127)

1987. 4. 11.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골목관리전환 소요조치

1.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령 물품에 대하여 관리 전환 소요를 조회하오니 희망부서에서는 87. 4. 20. 까지 관리전환 요청(성동구 건설관리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일까지 요청이 없을시는 소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것임.

가. 관리전환 소요조치 내역

일련 번호	관공문 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량	장부가액	취득년월일	상태	소재지
제		선 바 (F.R. P)	길이×폭 (M)	최	14				
1		"	5×1.7	"	1	439,000	86. 9. 6	중고	독삼대수
2		"	3.5×1.1	"	1	274,000	86.10.17	"	점프장
3		"	3.5×1.5	"	11	219,000 (책담)	86. 9. 6	"	"
4		"	4×1.3	"	1	329,000	86.11.26	"	"

끝.

성 동 구 청 장

(관 린 생 탁)

건 설 자 재 사 업 소

전 자 01750-193

(434-2031)

1987. 4. 11.

수 설 : 수설치 참조

개 목 : 50 T / M이동식 크랫샤 1 대 관리전환 소요조회

1.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인수 우리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50 T / M 이동식 크랫샤 1 대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지를 조사코자 하오니 필요부족 에서는 '87. 5. 15 일한 우리사업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기명 : 50 T / M이동식 크랫샤

나. 수 량 : 1 대

다. 모델명 : JJS G - 4 / MT D-2156

라. 전 장 : 12.080 m

마. 전 고 : 4 m

바. 전 폭 : 2.9 m

사. 마 력 : 215 / 205 P·S

아. 사용연료 : 경 유

자. 연료소모량 : 39-42 l/n

차. 기동수 : 6

카. 취득년월일 : '79. 2. 26

타. 취득금액 : ₩ 86,400,000

파. 제작회사명 : 삼성중공업㈜

하. 장비상태 : 사용가. 끝.

건 설 자 재 사 업 소 장

수설처 : 서과 14, 39-41, 45, 서구 1-17. (로복과), 서사 25 (1, 4 한강개발부)
28-31, 41.

문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실업교육과정 각종실무능력 검정수
수로 강사조례 제지조치를 이에 공포
한다.

1987. 4. 10.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장 최 열 군

조 례

◎서울특별시조례제 2152 호

서울특별시실업교육과정 각종실무능력검정
수수료징수조례제지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 1062 호 서울특
별시실업교육과정 각종실무능력 검정수
수로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규
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 4. 11.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서울특별시규칙제 2165 호

서울특별시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규
칙 개 정 규 칙

제 5 조 제 3 항중 별지 제 2 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 1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1 조 (시험관의 선발기준등) ①경
찰국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
하여 시험관을 선발하되 서울특별
시 경찰국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임명하여야 한다.

1. 경찰경력 2 년이상자로서 기본
교육 이수자
2. 시험에 의한 승진자(상계순)
3. 동일계급에서 장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운전경력자 아닌 자
5. 과거 면허업무부서에 근무경력
이 없는 자
6. 3 년이내 정년에 도달되지 아
니한 자
7. 인성조사와 인사위원회에서 부
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

②시험관의 근무기간은 정위이상은
2 년, 정사이하는 1 년이내로 한다.
다만, 면허제장(시험장장)은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③시험관의 근무지정은 1 인 근무

지정제로 하되 매일 오전, 오후의 근무장소가 다를 수 있도록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합리성있게 지정하여야 한다.

제 1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1조의 2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범위 및 배점) ①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 47조 및 제 48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지식중에서 50문제를 출제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취급방법 시험을 면제하는 때에는 법령중에서 50문제를 출제한다.

②제 1항의 출제방식은 객관식으로 하되,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문제는 4지선다형으로 하고 배점은 1문제당 2점으로 한다.
2. 설문의 부호는 갑, 을, 병, 정으로 한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은 전위형으로 하되, 한할해두이 미숙한 자에 대하여 3개월마다 1회이상 시험문제 단독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 12조 제 1항 내지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규칙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4회 변경 출제된 필기시험 문제지는 면허시험위원장 책임하에 보관 관리한다.

②시험감독관은 시험개시 전에 응시자중에서 2명을 지정하여 당해시

간에 실시할 필기시험문제지번호를 추출케 하여야 하며, 그 문제지 번호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문제지의 반복출제를 피하기 위하여 당해시험일 3일전까지 실시한 문제지번호는 추첨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시험감독관은 응시자에게 필기시험문제지를 열별로 상이하게 배부하여야 하고 응시요령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 11조의 2 제 2항 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험문제 단독방식으로 실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3조중 "다만"이하 단서를 삭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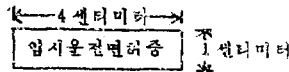
제 26조 다음에 "제 2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6조의 2 (외국기관 발행의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발급관리)

①법 제 72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거주 신고지를 주소지로 한다. 다만, 90일 이내의 단기체류로 인하여 거주신고불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된 국내 체류지를 주소지로 한다.

②제 1항 단서규정에 의한 단기체류자에 대하여는 신청일로부터 90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제 2종 보통면허에 한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되,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란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 40조 다음에 "제 4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0조의 2 (제 1종 면허소지자에 대한 제 2종 면허의 교부) 제 1종 대형면허 또는 제 1종 보통면허를 받은 자기 제 2종 보통면허로 교체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제 1종 대형면허

및 제 1종 보통면허를 취소하고 신 규로 제 2종 보통면허를 교부한다.

부 록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 1종 면허소지자에 대한 제 2종 면허교부에 대한 결과조치) 규칙 제 40조의 2에 정한 제 1종 대형면허 및 제 1종 보통면허 소지자에 대한 제 2종 보통면허교부에 관한 규정은 198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 2 호서식)

제 5 조 제 3 항

성명	수험번호	자동차운전면허필기시험답안지												합
		○	×	○	×	○	×	○	×	○	×	○	×	
주인사명	1. 1986년 12월 31일 이전	1	0	0	0	21	0	0	0	31	0	0	0	0
	2. 1986년 12월 31일 이후	2	0	0	0	22	0	0	0	32	0	0	0	0
	3. 1986년 12월 31일 이후	3	0	0	0	23	0	0	0	33	0	0	0	0
	4. 1986년 12월 31일 이후	4	0	0	0	24	0	0	0	34	0	0	0	0
	5. 1986년 12월 31일 이후	5	0	0	0	25	0	0	0	35	0	0	0	0
	6. 1986년 12월 31일 이후	6	0	0	0	26	0	0	0	36	0	0	0	0
	7. 1986년 12월 31일 이후	7	0	0	0	27	0	0	0	37	0	0	0	0
	8. 1986년 12월 31일 이후	8	0	0	0	28	0	0	0	38	0	0	0	0
	9. 1986년 12월 31일 이후	9	0	0	0	29	0	0	0	39	0	0	0	0
	10. 1986년 12월 31일 이후	10	0	0	0	30	0	0	0	40	0	0	0	0
합계		11	0	0	0	21	0	0	0	31	0	0	0	0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학원운영규칙
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 4. 11.

서울특별시감 염 보 원 인

◎서울특별시규칙 제 2166 호

서울특별시자동차운전학원운영규칙
개 정 규 칙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학원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학원장은 별표 1의 소칙 준칙에
의거 학원소칙을 정하여야 하며 그
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6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 조 (시설기준) ① 법 제 3 조의 규
정에 의한 학원의 설립인가에 필
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강의실

가. 학과강의실

학과강의실 면적은 최저 66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40 인
이상의 책상과 의자를 비치하
여야 한다.

나. 자동차구조 및 기능강의실

구조 및 기능강의실 면적은 최
저 66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자동차 엔진재 및 차대 2 대 이
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실 면적은 16.5 제곱미터 이
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화장실 및 급수시설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
이어야 하되,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하고 수세식구조 또는 현대식
시설을 하여야 하며,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수질이 관할 보건소에서
보건위생상 허가없다고 증명된 것
이어야 한다.

4. 차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및 조명시설

차광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
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야간교습을 하는 학원의 조
명시설은 책상면과 휴관면의 조도
가 15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5.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환경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
과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휴게실 및 양호실

1 일 수강자가 500 인 이상인 학
원에 두되, 휴게실은 16.5 제곱

미터 이상, 양호실은 6.6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설치시설 설비

운전교습장은 6,600 제곱미터 이상 (2층으로 교가교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으로 하되 다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정비장 및 차고시설

(1) 정비장은 66 제곱미터 이상

(2) 차고는 75 제곱미터 이상 (바닥은 콘크리트, 지붕은 스프레트 등)

나. 실습설비 및 장비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39 조 제 1항 (별표 15) 에서 규정한 글

원코스, 복선코스, 방향전환코스

각 3조 이상 및 폭 3미터 이상, 길이 200 미터 이상의 정방향

주행 코스에 1개 이상의 경사 코스를 설치하되 표장을 하여야 하며, 정방향 코스에는 규격에 맞는 안전표지 5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생산공장에서 출고된지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실습용 차량 10대 이상

(3)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28 조의 규정에 적합한 도로운전 교습용차량 (학원장 및 설립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 1대 이상

실시장 정원의 3% 이하

② 제 1항의 시설은 동면부근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제 7 조 제 2항 및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제 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부지 및 시설등이 학원설립요건에 적합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 확인한후 시설기준에 맞는 때에는 인가를 하고 별지 제 5호 서식의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학원을 인가할 때에는 그 학원의 교습정원군 책정하고 그 사람은 별지 제 6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7 조 다음에 제 7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7 조의 2 (설립자, 학원장, 강사등의 겸직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원의 설립자, 학원장 및 강사가 될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판결로 복권되지 아니한자

4. 금고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5. 학원 인가취소를 받은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학원장 및 설립자에 한함)

제 8 조 제 1항 단서중 "제 5호 내지

제 7 호"를 "제 5 호 및 제 7 호"로 한다. 제 9 조 다음에 제 9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9 조의 2 (실업인가 등의 제한) ①시장은 학원난립으로 인한 부실교육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제 7 조 규정의 실업인가 및 제 9 조 제 2 항 제 2 호의 위치변경을 제한 할 수 있다. 1. 타인 재산인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임대기간 설정 2. 인구비밀에 의한 실업인가 기준 설정 - 서울특별시 전체인구 20 만명 단위로 1 개소 ②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직업분포도, 운전면허자 현황등 지역여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 1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8 조 (교습반의 편성) ① 학원장은 수강신청자의 질 수준으로 교습반을 편성하여 교습하여야 한다. ②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추성반은 다음 각호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다. 1. 이미 받은 운전면허와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자 (제 2 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편허소지자 제외) 2.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	를 받고자 하는자 ③학원장은 추성반 수강자에 대하여 이미 받은 운전면허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입증하는 구문서류를 수강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제 3 항 다음에 제 4 항 및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 25 호 서식 및 별지 제 27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④기능교수용 차량은 운전교습이 불가능하도록 항상 정비되어야 하며 도로운송차량법에서 정하는 차량 면허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학원장은 별지 제 25 호 서식에 의한 기능교수용 차량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학원별로 차량점검반을 지정하여 별지 제 27 호 서식에 의한 차량일일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2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4 조 (도로운전교습 등) ①도로운전교습 및 연습을 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28 조, 제 29 조의 규정에 정한 운전교습자 및 운전연습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도로운전 교습의 순서는 먼저 학원내에서 충분히 운전교습을 실시한 후에 도로에 진출하되, 한산한 도로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교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학원장은 도로연수물함에 있어 타인에게 운전교습용 차량을 매도 또는 임대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 26 조 제 5 항 다음에 제 6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감사결과 우수학원에 대하여는 시상하고 불량학원에 대하여는 응분의 조치를 함과 동시에 그 시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27 조 중 제 2 항 및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표 4 를 별지의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 22 호 서식 내지 별지 제 24 호 서식 및 별지 제 26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미리 그 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의견진술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별표 4 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별지 제 26 호 서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을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학원을 다시 인가할 수 없다.

④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 22 호 및 제 33 호 서식을 학원장에게 환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 24 호(행정처분 판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33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5 항 제 4 호를 삭제한다.

① 시장은 법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에서 징수할 수 있는 수강료의 기준액을 교습반별로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학원장은 수강료의 기준액을 수강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고시액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35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원의 설립자는 1 월이상 휴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소하는 날의 5 일전까지 별지 제 19 호 서식의 휴소신고서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휴소기간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물신축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년의 범위 안에서 휴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1986 년 4 월 2 일 이전 규정에 의하여 설립 인가를 받은 기존 학원은 1988 년 5 월 21 일까지 실거교습장 부지 6,600 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1990 년 12 월 31 일까지 강의실과 실거교습장을 동일 부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

자동차학원행정처분기준

(제 27 조)

번호	위법사항	적용법조	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것이 판명된 경우	법 14 조 1 항 1 호	취 소			
2	제 6 조의 시설기준에 미달 하였던 경우	법 14 조 1 항 2 호	3 개월 이하휴소	취 소		
3	정당한 사유없이 개소에 정일부터 2월이 경과할때 까지 개소하지 않은 경우	법 14 조 1 항 3 호	2 개월 이하휴소	취 소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이상 휴소한 경우	법 14 조 1 항 4 호	"	"		
5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법 14 조 1 항 5 호	"	"		
6	고습생을 모집함에 있어 대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경우	법 14 조 1 항 6 호	경 고	1 개월 이하휴소	3 개월 이하휴소	5 개월 이하휴소
7	소칙을 위반한 경우	운영규칙 1 항 5 조	정 고	15 일 이하휴소	1 개월 이하휴소	2 개월 이하휴소
8	인가사상 변경위반	법제 5 조 제 2 항	"	1 개월 이하휴소	2 개월 이하휴소	3 개월 이하휴소
9	무자격강사 채용 (선임)	법제 11 조	"	15 일 이하휴소	1 개월 이하휴소	2 개월 이하휴소
10	강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반한 경우	운영규칙 제 12 조	"	10 일 이하휴소	20 일 이하휴소	1 개월 이하휴소

번호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11	강사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운영규칙 제 13 조	경 고	10 일 이하휴소	20 일 이하휴소	1개월 이하휴소
12	강사의 연수 등을 위반한 경우	운영규칙 제 14 조	"	"	"	"
13	강사의 정원을 위반한 경우	운영규칙 제 15 조	"	"	"	"
14	수강신청 등을 위반한 경우	운영규칙 제 16 조	"	"	"	"
15	교습반 및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	운영규칙 제 17 조	"	"	"	"
16	교습반 편성을 위반한 경우	운영규칙 제 18 조	"	"	"	"
17	교습방법을 위반한 경우	운영규칙 제 19 조	"	"	"	"
18	교습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운영규칙 제 20 조	"	"	"	"
19	교재 등을 위반한 경우	운영규칙 제 21 조	"	"	"	"
20	교습평가에 위반한 경우	운영규칙 제 22 조	"	"	"	"
21	정원을 초과 교습하였을 경우	운영규칙 제 25 조	"	1개월 휴 소	3개월 휴 소	위 소
22	관계공무원의 경감한 출장을 방해하는 경우	운영규칙 제 25 조	"	"	"	"
23	장부 및 관세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운영규칙 제 30 조	"	15 일 휴 소	1개월 휴 소	2개월 휴 소

(별지 제 23 호 서식)

(제 27 조 제 4 항)

경 고 장

제 호 :

학 원 명 :

설 립 자 :

귀 학원은 사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1 항과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학원 운영규칙 제 조 제 항 () 를
 위반하였으니 198 . . 일까지 시정하여 정상적
 인 학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시에는 소정의 규정에 의거 엄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
 을 경고합니다.

198 . .

서울특별시장

㉔

 120mm X 268mm
 분량색실문용지 54 g/㎡

28-16 제 1354 호

시

보

1987. 4. 11

(별지 제 23 호 서식)

(제 27 조 제 4 항)

제 호

자동차운전학원행정처분통지서

학 원 명		학 원
학 원 장	성 명	
	주 소	
행정처분	경자처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정내용	취소처분	년 월 일
사 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 14 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 행정처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경찰국 면허과에 자동차학원 인가증을 반납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190 mm X 256 mm
신문용지 545/지

제 185호

시

보

1987.4.11 28-17

(별지 제 24 호 서식)

(제 27 조 제 4 항)

자동차운전학 원형정차분 (정지) 관리대장
부소

구분 일련번호	학원명	학원장	정정처분 내 용	위 반 사 항		인가증보관사항		비 고
				내 용	정문일시	회수일시	수행자	

190 mm X 268 mm

인쇄용지 (2급) 60g /㎡

(별지 제 25 호 서식)

(제 19 조 제 5 항)

(기차교습용)

차량관리대장

(도로연습용)

구분 연번	차 례	년 식	차대번호	일련번호	구입일자	차량민기	비 고

190 mm X 268 mm

인쇄용지 (2급) 60g /㎡

28-18 제 1354 호

시

보 1987.4.11

(별지 제 26 호 서식)

(제 27 조 제 2 항)

계 호

지통차운전학원행정처본결정서

학 원 명		학원	
학 원 장	성 명		
	주 소		
행정처분	정기처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정내용	취소처분	년 월 일	
처 분 사 유			

상기 학원은 사설 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와같이 결정함.

년 월 일

계장	과장	부장	국장	결
				재

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제에는 제 6조 제 1항의, 특별 정수를 공제한 정수가 취소기준에 도달한 때에 한하여 처분한다.

②면허정지는 운전자가 별표 3의 범규위반 및 별표 4의 사고야기로 인한 개별기준 범점이 30점 이상에 도달한 때와 별표 5의 산업업을 위반 한때에 처분한다. 다만, 1회의 위반 또는 사고로 인한 범점이 30점 이상인 때에는 그 이전의 범점을 합산하여 처분하되 범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정지기간을 산정한다.

제 8조 다음에 제 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8조의 2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범점합산) 범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점을 모두 합산한다.

1. 범규위반시의 범점 (가장중한것 하나만 적용한다)
2. 사고 결과에 따른 범점
3. 사고야거시의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범점

제 9조 제 1항내지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5항 및 제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 6항중 별지 제 1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 9조 (면허취소처분 절차) ①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때에는 당해

운전자를 출석시켜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기 적성검사를 미필하여 취소하는 경우와 면허 취소사유가 분명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진술 청취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왜곡의 행위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진술을 들을 수 없을 때에는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진술 청취는 관할 경찰서장이 하며, 진술 청취결과 위소사유가 명확히 입증된 때에는 당해 운전자의 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운전자가 그 위소사유에 불복하거나 경찰서의 보관 자료로서는 그 위소사유를 입증함에 불충분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진술 청취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면허 취소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회수한 면허증과 경찰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위소심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취소상신을 받은 시장은 관제구증 서류를 확인하고 원요한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등 취소처분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취소처분을 결정할 후 당해 운전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취소처분 일자와 운전면허 결정 기간을 통지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취소사실을 시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처분 통지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⑤ 경찰서장은 운전자가 1회의 범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121점 이상이거나 별표2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술을 들은 후 취소사유가 입증되면 즉시 면허증을 회수하고 관계서류들을 신속히 시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취소대상자의 벌점을 감경한 결과 취소처분 현점에 미달되어 정지처분을 집행할 때에는 면허증 회수일때 소급하여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때에는 면허증 회수일을 집행일로 하고 그 취소사유들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장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진술을 듣지 않는 경우에도 취소처분일을 집행일로 한다.

제10조 제1항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항중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면허정지처분절차) ① 경찰서장은 운전자가 별표3, 별표4 및 별표5중 적용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자료표를 정확히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3의 자료표 작성기준은 시정국치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관할 구역외에 거주하는 운전자의 즉결 심판 청구서 및 법치사건표 송부시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표를 받은 시장은 당해 운전자에 대한 벌점을 신속히 가산 또는 상계하여 그 벌점이 30점 이상인 때에는 그 명단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시달한다.

③ 면허 정지처분은 관할 경찰서장이 결정 집행하며, 경찰서장이 면허정지 처분을 결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서도 하여야 하며 당해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지처분 집행 개시일은 그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7일 이후로 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반납용지에도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할 기간으로 부터 10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재동지물 하여야 하며, 재동지일로 부터 10일이 경과되어도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⑤ 경찰서장은 운전자가 1회외 위반 또는 사고로 인한 벌점이 30점이 상으로 면허정지 사유가 명확한 때에는 20일간의 임시 운전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를 교부하고 당해 운전자의 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당해 운전자에게 임시 운전증명서 유효기간 종료일에 주거지 관할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고지하고 회수한 면허증과 임시 운전증명서 사본등 관계서류를 신속히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를 통보받은 경찰서장은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종료일 한 일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다만, 당해 운전자가 임시 운전증명서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의 출석한 때에는 임시 운전증명서를 회수하고 회수한 날로부터 정지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⑦ 면허정지 처분을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자동차운전교육 실시규칙에 정한 교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처리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에게 그 집행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2항 다음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위거 정지처분 기간을 가산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서 기간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못함이 입증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의 지연일수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1.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가. 국외에 체류중인자

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자

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
의 자유를 구속당한 자

라. 군 복무중이거나 사회 관습
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
는 자

2. 행정기관의 사무착오등으로 인
한 경우

가. 법 제 75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지 변경 신고를 법집 기
간내에 하였으나 그 주소지 변
경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통
보지연 및 누락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공지가 늦게 도착했
거나 도착하지 않았을 때

나. 본지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행정처분 공지가 늦게 도착했
을 때

다. 기타 면허증의 반납지연이 본
인의 귀책 사유라고 인정할 수
없음이 판명되어 지연일수를
가산하는 것이 실제 부당하다
고 인정된 때

제 16조 다음에 제 17조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제 17조 (국제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
한 운전금지 조처등) 법 제 81조
및 시행규칙 제 53조의 규정에 경
한 국제운전면허소지자의 운전금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2의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1년간 운전금지
2. 별표 3 및 별표 4에 해당하는
때에는 1회 위반 및 교통사고
로 인한 벌점이 30점이상인 경
우에 한하여 그 벌점 해당일을
운전금지

별표 4 "교통사고 야기시 행정처
분 개별기준"중 ㉞조치등 불이행
에 따른 벌점기준(비고)란의 "6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벌받을 운전자, 본인의
인척피해와 물적피해(자 및 화
물의 파손등 말한다)에 대하여
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② (정지처분 집행일수 가중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속전의 규칙에
의하여 면허증 산당자인 일수를
가중중역 있는자가 제 12조 제 3항
의 부득이한 사유등이 이 규칙
시행후에도 계속중인자에 한하여
개정규칙을 적용한다.

28-24 제 1354 호 시

날 1987. 4. 13

(별지 제 10 호서식)

운전면허취소처분대장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면허 번호	위반 내용	적용 법조	취소장 년월일	운전면허 취소장 년월일	제출 번호	발송 일	검정 장	과장

(별지 제 11 호서식)

○ ○ 경 찰 서

수신 : 경찰서장

1987. . . .

참조 : 경비과장 (교통계)

제목 : 교통법규 위반자 스티카 통보

아래와 같이 교통법규위반자 스티카를 통보합니다.

○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면허번호	위반일자	적용 법조	스티카 번호	이 고

첨부 : 스티카 부. 끝.

○ ○ 경 찰 서 장

시 교 위 규 칙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사무분장규
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 4. 10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교육장 최열근

◎교육규칙 제 312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사무분장규
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사무분장규
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 제 1 항중 생활지도담당장학관
다음에 “정신교육담당장학관”을
삽입한다.

제 5 조 제 5 항 제 6 호를 삭제한다.

제 5 조 제 5 항 제 9 호를 삭제한다.

제 5 조 제 5 항 제 10 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10. 중등학교의 학생지속 및 경제
교육에 관한 사항

제 5 조 제 5 항 제 11 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11. 교원교육지도 및 봉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 5 조 제 5 항 제 12 호를 삭제한다.

제 5 조 제 5 항에 제 1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기타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제 5 조 제 5 항을 제 7 항으로 하고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정신교육담당장학관은 다음 각호
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학생의 국민정신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국민정신교육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신교육 자료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이념교육 연구 및 수련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전향전학등 현장교육에
관한 사항
6. 교원의 전방 및 산업시설등
현장교육에 관한 사항
7. 기타 정신교육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1987. 3. 16 부터 적용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248 호

쇠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

쇠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 시정예
관한 규정(공립수산부 고시 제 85-47
호, '85. 8. 22)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쇠고기와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7. 4. 11

서울특별시 장

1. 쇠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
쇠고기(정육 500그램당) 3,200 원
돼지고기(정육 500그램당) 1,700 원
2. 시행일
1987.4.13 부터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239 호

도 시 계 획 안 공 략

1. 도시계획법 제 16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의 2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 도시계획안

1) 도시계획시설(도로)

구분	종 류	폭원 (m)	연 장 (m)	시 점	종 점	비 고
기 정 변 경	대 2-36 "	30-42 30	6,746 5,226	오 록 교 전행여교앞 4 거 리	부천시 학동 "	연장 1,520 m 구간매거
신 설 기 정	대 - 279 중 1-116	25-42 20	1,550 3,350	오 록 교 강서구 목동 406-12	목동 5 거리 남부순환도로	부원확장
변 경	"	20	2,700	목동 5 거리	"	대 2-75 와 중부 구간 650 m 제외

공고하고 관계도서는 아래 공람장소
에 비치하여 14 일간 일반인에게 보
인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란
다. 공람기간: 1987.4.11-4.25
(14일간)

나. 공람장소: 목동지구개발사업소 토
목공사과

다. 관계도서: 목동지구개발사업소 토
목공사과 비치도면과 같음.

1987. 4.11

서울특별시 장

2)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분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강서구목동 406 일대	33,220	
변경	"	"	41,448	구역변경
기정	"	강서구목동 408 일대 및 신정동 85 일대	49,776	
변경	"	"	47,756	구역변경
기정	"	강서구목동 408 일대	36,662	
변경	"	"	36,662	재지
(재지)				

3)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역내 도시계획 시설 (도로)						
구분	종류	주원 (m)	면적 (㎡)	시점	중점	비고
기정	소 3-1	5-20	130	중 1-116	강서구목동 405-3	
변경	소 1-1	10	220	강서구목동 408-93	"	목원축소
기정	소 3-2	5-20	240	대 3-162	중 1-116	
변경	소 1-2	10	190	대 3-162	강서구목동 408-93 (소 1-1)	목원축소

◎서울특별시공고제 242 호

제2종전기공사면허취소처분

국세징수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아
태 제2종 전기공사면허 소지업

재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 처분하고
전기공사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

1987. 4. 11

서울특별시강

면허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지분사항	사유
167	종합전기상사	중로구팔판동 19	조성표	면허취소	국세징수

사

령

소 속	직 급	성 명	훈련기관	훈련분야	파견기간	훈련비용	비고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행정 사무관	권종수	영국왕립행정 연구소	교관요원	87.4.24 - 5.26	국비부담	

◎ 1987 년 4 월 10 일자 병제 107 호
중로구
지방보건지원 김 광 천
대통령경호실파견 (87.4.22-88.4.21)

마로구
지방보건지원 박 영식
대통령경호실파견 (87.4.22-88.4.21)

◎ 1987 년 4 월 11 일자 병제 108 호
한강관리사업소
소장 (직무대리) 지방서기관
이 용 선

지방부이사관예 임함
3급 9호봉에 준함
한강관리사업소장예 보함

서울특별시장